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 폐쇄회로TV(이하'CCTV')의 취급과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은행의 CCTV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설치 및 운영)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한다.

- ①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②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③ 금융거래 사고예방

## 제2장 설치 현황

### 제4조 (설치 현황)

① 설치 대수 : 22대 은행은 영상정보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CCTV의 설치 및 설치장소를 효율적으로 산정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설치대수	설치위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1 대	서버실, 문서창고, 출입구, 복도 등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및 금융거래 사고예방	11 대	금고, 객장, 개인정보창고, 캐셔 등

설치대수 및 설치 장소는 서울지점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제3장 관리 현황

#### 제5조 (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은행의 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구분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서울지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총무부서장	CCTV 담당자
연락처	02-6730-3751	02-6730-3781	02-6730-3782

#### 제6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①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24시간(365일)
보관기간	92일 (저장매체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영상정보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삭제)
보관장소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파기 시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②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서울지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장소	영상정보가 촬영된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 제4장 영상정보 처리

#### 제7조 (영상정보 열람)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한 정보주체의 긴급한 필요,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을 요구할 때 영상정보가 촬영된 CCTV의 설치장소, 영상정보

기록기간, 청구 목적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때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 자신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열람 등 조치를 취할 때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최소한으로 제공한다.

④ 은행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8조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은행은 개인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여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제5장 보칙

### 제9조 (규정 변경)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서울지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첨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별첨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 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 3 자에게 주는 경우  
(제 3 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2.10.10. 14:00 등)
-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2.10.5 일 3~10 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 동.mp4 등)
-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 과 00 직급 홍길동)
-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 이용·제공받는 제 3 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 경찰서 00 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 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2.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2.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 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 일 확인)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2.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2.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2.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2.10.11) 받은 후 파기함(12.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2.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